

예산총칙

제 1 조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384,543,870	11,536,316
일반회계	335,492,646	10,064,779
특별회계	49,051,224	1,471,537
공기업특별회계	11,007,739	330,232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1,007,739	330,232
기타특별회계	38,043,485	1,141,305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251,632	37,549
자활기금특별회계	1,746,300	52,389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2,756,585	82,698
기반시설특별회계	427,800	12,834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348,580	10,457
주차장관리운영특별회계	808,142	24,244
수질개선특별회계	30,704,446	921,133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 : "해당없음"

제 4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사"와 같다.

제 5 조 (명시이월사업) : "해당없음"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5,568,000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일반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10,200,000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다음 경비에 부족액이 생겼을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비목 상호간 또는 타 비목으로부터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인건비는 타 비목으로 이용할 수 없다.

1.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2. 재무활동경비
3. 동일 부서에서 동일부문에 있는 정책사업간 경비
4.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 등